

대전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118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새미래

담당변호사 박상혁

변 론 종 결 2022. 9. 6.

판 결 선 고 2022. 11. 1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충남 논산시 D 전 4,852㎡ 중 3/13 지분에 관하여 2018. 2.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21,274,15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274,1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C 사이에 충남 논산시 D 전 4,852㎡ 중 3/13 지분에 관하여 2018. 2.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E조합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2016차전22578 사건에서 2016. 8. 30. “C은 원고에게 26,398,174원 및 그 중 11,1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6.부터 2016. 9. 19.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49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3,134,815원에 대하여는 2016. 8. 16.부터 2016. 9. 19.까지 연 14.5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지급명령이 2016. 10. 5. 확정되었다.

나.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2. 2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과 피고를 포함한 자녀 5명이 있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2. 23. 망인의 소유였던 충남 논산시 D 전 4,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7.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C에 대한 양수금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등의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상속분 3/13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를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방법과 범위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 24.

채권최고액 8,000만 원, 근저당권자 G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4. 26.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G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 후인 2018. 8. 13.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 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만큼, 이 사건 토지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으로 할 수는 없고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나아가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 당시 329,936,000원이고, 위에서 본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당시 그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실제 피담보채무가 85,318,6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C의 상속재산가액은 56,450,164원[= (329,936,000원 - 85,318,620원) × 3/13,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는 38,238,707원이므로, 그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분할협의는 21,274,15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가 C과 체결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21,274,15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274,1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의 G조합에 대한 대출금 85,318,620원을 변제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치게 되었고, 망인의 생전에 2억 원 가량의 채무도 대위변제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C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또한, C은 파킨슨병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로서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의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역시 C의 사해의사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이해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C의 사해행위나 사해의사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환